

(앞쪽)

제 호				
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				
업체명			대표자	
소재지			전화번호	
품명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제작기간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제품 제작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				

..... 자 르 는 선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수령증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

안 내 사 항

1. 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규격의 시험제품을 제작해야 합니다.
2. 시험제품이 지정된 규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.

※ 주의사항

1.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.
2.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.

가.

나.

다.